

제417회 국회
(임시회)

법 제 사 법 위 원 회 회 의 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8월27일(화)

장 소 법 제 사 법 위 원 회 회 의 실

의사일정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4)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8)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8)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2)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5)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6)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3)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4)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1)

상정된 안건

- | | |
|--|---|
| 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4) | 3 |
| 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8) | 3 |
| 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8) | 3 |
| 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2) | 3 |
| 5.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5) | 3 |
| 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6) | 3 |
| 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3) | 3 |
| 8.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4) | 3 |
| 9.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1) | 3 |

(10시07분 개의)

○소위원장 김승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 제 사 법 위 원 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하여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순서 관련돼서……

○**소위원장 김승원** 예, 간사님.

○**유상범 위원** 민법 개정안은 중간에 헌법재판 결정이 나오면서 논의할 게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부안으로 올라온 5개부터 먼저 하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간사님, 좀 이견이 큰가요, 민법 개정안에 대해서?

○**유상범 위원** 아니, 중간에 조금 의견들이, 법원에서 올라온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법안을 조금 더 논의를 할 게 있어서 일단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고 여유 있게 이것을 진행하자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서영교 위원** 아니, 구하라법은 아주 오래됐는데 구하라법을 빨리빨리 먼저 하고 가야지요.

○**유상범 위원** 아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영교 위원** 걱정……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유상범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결정이 새로 나와서 그 법안에서 우리가 21대 때 논의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완할 게 있는데, 오늘 법원에서 각 법안 법률 검토의견서를 낸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논의할 부분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논의할 대상이 없는 정부안부터 먼저 하자는 겁니다, 지금 간단히. 오늘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거의 안 걸리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그러면 4항부터 하기로 하고요.

○**서영교 위원** 정말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요.

○**소위원장 김승원** 아무튼 잘 합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서 위원님, 법안을 합의해 주려고 하는데……

○**서영교 위원** 뭘 법안을 해 주려고 해요, 해 주려고 하기는?

○**유상범 위원** 법안을 합의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잖아요.

○**서영교 위원** 아니, 법원의……

○**유상범 위원** 아니, 그 시간에 이렇게……

○**서영교 위원** 등기 전산 관련한 것은 금방 다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셔도 다른 것 충분히 논의하고 할 수 있는데 순서까지 바꿔 가면서 하자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유상범 위원** 다른 의도……

○**서영교 위원** 구하라법 같은 경우에는 20대, 21대 내내 몇 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헌법재판소 얘기가 들어오면서 더 복잡해졌어요. 그러면 이런 식이면 못 합니다.

○**유상범 위원** 할 수 있습니다.

법안 하나 때문에 시간이 너무 걸리면 다른 법안 토론할 시간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아주 간단히 끝나는 것을 먼저 마무리하자는 겁니다.

○**서영교 위원** 말은 충분히 그럴싸하지만……

지금 순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순서대로 갑시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위원님들 합의가 안 됐으므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4)
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8)
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8)
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2)
5.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5)
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6)
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3)
8.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754)
9.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1)

(10시11분)

○소위원장 김승원 의사일정 1항부터 9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참석 하셨습니다. 심우정 법무부차관은 인사청문회 준비 관계로 변필건 기조실장이 대리 출석 하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화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민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법안 심사가 이루어졌고 우리 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계존속 등에 대한 상속권 상실선고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기, 학대 등의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가 일반 국민의 법감정 및 상식에 반한다는 이유로 2025년 12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당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기존 대안에 대해 일부 수정이 필요하고 시행시기를 일정 기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상속권 상실선고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개정안은 상속권 상실선고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21대 대안의 내용과 대부분 동일하되 피상속인의 생전 청구 가능 여부, 상속권 상실선고 청구권자, 청구 대상, 청구 사유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의 생전 청구 가능 여부입니다.

대안과 서영교 의원안, 정점식 의원안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법원의 재판을 거쳐 상속권을 상실하도록 하는 반면 김성원 의원안은 피상속인에 의한 생전 청구를 인정하고 있는데 상속 개시 전 구체적인 권리로서 발생하지 않은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상속권 상실선고 청구권자와 관련하여 대안과 서영교 의원안, 정점식 의원안은 피상속인, 공동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김성원 의원안은 모든 법정상속인과 검사 또는 지자체장이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적 불안정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청구 대상입니다.

대안과 서영교 의원안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김성원 의원안, 정점식 의원안은 상속권 상실 청구 대상을 상속인이 될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유류분 상실 사유 미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위헌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계존속뿐 아니라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 상속인이 될 사람을 상속권 상실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도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구 사유입니다.

대안과 서영교 의원안은 직계존속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범죄 행위, 부당 대우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점식 의원안은 부양의무 위반에 있어 미성년자로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위반 시 상속권 상실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권 상실 청구 대상을 직계존속으로 한정하지 아니한 경우 함께 정비가 필요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김성원 의원안은 청구 사유에 ‘학대’를, 정점식 의원안은 ‘유기, 학대’를 추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대습상속 규정 정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점식 의원안은 직계비속 등에 대한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에 따라 대습상속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권을 상실한 때 그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지 못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반영하여 상속권 상실 청구 대상을 직계존속뿐 아니라 상속인이 될 사람으로 확대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 등이 상속권 상실 대상이 될 수 있어 그 손자녀 및 배우자에 대한 대습상속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는바 상속 결격과 같이 상속권 상실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법무부와 법원도 같은 의견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정점식 의원안은 상속인의 유류분 중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이미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유류분의 기여분 관련 조항 준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점식 의원안은 헌법재판소의 민법 제111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반영하여 유류분에 기여분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시 기여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유류분에 기여분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만으로 위헌적 요소가 해소되는 것인지 민법상 다른 규정도 함께 개정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의 구체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부칙입니다.

먼저 시행일입니다.

각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21대 대안에서는 헌법불합치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개정시한을 고려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시행시기를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한 현행 민법 규정을 재정비하여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시행시기를 2026년 1월 1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용례입니다.

각 개정안은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시행되는 상속 부터 적용하되 상속권 상실 사유에 대하여는 법 시행 전에 상실 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 시행 후 상속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일 이후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패륜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법률의 개정입니다.

개정안은 가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상속권 상실 청구 소송을 나류 가사소송으로, 상속 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각각 의원안에 대해서 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에 대한 의견은, 민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법사위 1소위에서 여야 및 법무부, 법원행정처가 합의로 통과된 대안과 동일한 안입니다. 다만 시행 시기가 차이가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상속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패륜적인 상속인에게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1112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하라법 논의와 함께 위헌결정의 관련성 및 21대 국회 합의 대안에서 시행시기를 2026년 1월 1일로 정한 취지를 종합해서 위헌결정에 대한 추가 논의가 조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희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성원 의원안에 대한 의견은 마찬가지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는데 대습상속을 인정할지 여부 그다음에 청구권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서 줄여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점식 의원안에 대한 의견은 마찬가지로 그 취지에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정점식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그 내용을 반영하고 있을뿐더러 직계존속뿐이 아니라 직계비속,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21대 국회 제출안과 정부안과 동일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특별한 이견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법원행정처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입니다.

우선 구하라법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패륜 직계존속에 대해서 상속권을 상실하는 내용의 법안은 종전 국회에서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왔고 21대 국회에서도 1소위에서는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속권을 상실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됨에 따라서 2026년 1월 1일까지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새로운 문제가 생기게 됐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 판시 사항인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인데 사실 가장 강력한 방법은 상속권을 상실하는 것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유류분을 상실하는 제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 법안이 나왔을 때 오늘 상정된 법안은 상속권을 상실하는 형태의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가하는 것으로 지금 세 법안이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직계존속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직계존속 이외에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즉 상속권 상실로 갈 것인지 아니면 상속권 상실로 가더라도 그 사유를 달리 볼 것인지 아니면 상속권 상실보다도 더 약한 유류분 상실 사유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외국의 입법 사례를 비추어 봤었을 때 상속권 상실과 유류분 상실을 상속인별로 나눠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 위원님들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을 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영교 의원님 안대로 직계존속에 관해서만 상속권 상실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지게 되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서 직계비속과 배우자에 대한 유류분 상실을 규정하지 않은 위헌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에서 위헌으로 판단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부분은 위헌이 선고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돼야 된다는 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법원행정처에서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세 번째 부분인데요. 현재에서 위헌결정 한 요소 중의 세 번째 부분은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에 대한 부분이 준용되지 않는 것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요.

지금 정점식 의원안에 보면 그냥 단순히 기여분에 대한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준용하는 규정만으로서는 지금 현재에서 문제 삼고 있는 위헌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지가 좀 의문이라는 것이 저희 법원행정처의 입장입니다. 개선 입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것도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여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서 유증을 공제한 부분을 한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의 개념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기여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인데 유류분에 이 개념이 도입되게 되면 상속재산에 한정하지 않고 유증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이것이 도입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여분의 개념을 아예 바꿔서 새롭게 입법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기여분 개념을 전제로 해서 보완 입법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두 가지의 입법 형태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준용 규정을 두자라는 취지는 기여분의 개념을 좀 더 확대해서 새롭게 설정을 하고 관련되는 입법을 모두 병행해서 개정하자는 취지로 방향성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와 같이 준용 규정이 이루어진다면 여러 관련 법률에 대해서 수정 작업이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현재의 기여분 개념을 유지한 상태라고 한다면 다른 조항을 손보는 방법으로 위헌적 요소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져서 지금 세 번째 기여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시기와 관련해서 이와 같이 민법이라는 국가의 중요 입법이 개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시행시기가 바뀌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여분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도 2026년 1월 1일까지 이루어져야 되고 아울러서 말씀드린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유류분 배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보완 입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의 통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2026년 1월 1일로 시행시기를 두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 주시면……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유상범 위원 사실은 우리가 21대에서 친권 상실을 논의할 때는 현재 결정 나기 전에 다 만들어진 법안으로 논의하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에 봉착했는데 설명하는 것 중에서 보면 세 가지 현재에서 위헌결정을 한 것 중에서 전자의 두 가지는 이 논의에서 우리가 입법정책적으로 빨리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유류분 산정에서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인데 설명을 들어 보니까 제도적인 보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관련 법규 개정까지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단계에서 그것까지 개정하자고 논의하면 아마 이것 하세월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련 법규를 다 손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전자의 두 가지는 여기서 정리하고, 그래서 구하라법을 일단 시행을 하고 유류 분에 기여분 반영하는 부분은, 일단 시행시기를 2026년 1월 1일로 늦추고, 현재 결정에 따른 시행시기로 맞추되 그 사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형태로 이렇게 간다면 오늘 이 법안 합의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유상범 위원 기조실장님도,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법안 오늘 논의가 종결될 수 있겠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저희도 준비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니까 시행시기만 조정하면 어느 정도 입법정책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잠깐 말해도 될까요?

○소위원장 김승원 서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법원행정처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서영교 위원 상속 상실 또는 결격—원래 결격이었는데 지난번에 합의가 되면서 상실로 됐어요—이 제도와 유류분 박탈제도를 같이 실시하는 나라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예가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저희가 찾아본……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제가 전문위원께 질의할게요.

상속인 결격과 유류분 박탈제도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까?

전문위원이 준 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말할까요?

○전문위원 이화실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서영교 위원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가 있어요.

○전문위원 이화실 예.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속인 결격제도—제가 상실로 양보를 하기는 했었는데—이 제도와 유류분 제도를 같이 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스위스가 있어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속인 상실선고를 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일본 정도가 있지, 아까 말씀하셨던 프랑스도 사례가 달라요.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신 해외 입법례를 한번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좀 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일본과 프랑스라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프랑스가 상속인 결격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도 여기에는 정리가 되어 있는데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오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여야가 구하라법을 합의하자라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구하라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월호 때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천안함 때도 있었고 마우나리조트 때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었는데 같이 키우던 한쪽 부모가 그 아이가 놓고 간 보험료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크게 관심 없이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를 키우지 않던 다른 부모에게 연락이 간 거지요, 법원에서 ‘이 돈 반 갖고 가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 돈 반 그냥 갖고 가거나 그러면 아이를 키우던 쪽에서 ‘안 돼요’라고 하면 소송이 걸리는 상태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지 않은 부모는…… 솔직히 말해서 아이를 키우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가 어릴 때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돈도 필요하고—최소한의 것이 안 돼서 키우지 않은 사람은 상속의 자격이 없다 이런 게 구하라법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법을 만들었고 구하라 양의 사례가 생기면서 온 세상이 들끓은 사례가 되었지요. 그래서 만들어졌고 여야가 어떻든 합의가 잘 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합의가 됐는데, 헌법재판소에서 4월 25일 판결 결정이 나왔지만 저희가 합의 본 것은, 위원장님, 그 다음이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21대 국회가 끝나기 직전 5월에 아마 저희가 합의를 봐서 통과를 시키려고 했는데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안 된 거예요. 그때도 현재의 유류분 판결이 나왔지만 우리는 구하라법만 만들어서 통과시키기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류분 헌법불합치가 나왔고, 그때 통과를 못 시켜서 이번에 유류분 헌법불합치를 넣어서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지금 법안으로 올라오게 된 건데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법무부 비서실장님?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서영교 위원 기조실장님께 여쭤볼게요.

기조실장님, 그러면 현재가 상속에 관한 헌법불합치를 낸 겁니까 아니면 유류분 헌법불합치를 낸 겁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정확하게 말하면 유류분 상실 사유를 두지 않은 직계존비속, 배우자에 대한 유류분 그 부분을 헌법불합치한 것은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패륜적이거나 이런데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재산을 학교에 다 기부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피상속인들이 ‘내 유류분이라도 줘’라고 하면 줘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제도로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줘야 하는데 달라고 했던 자가 보니 패륜이었어요.

사실 패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판결로 패륜이 나오는지, 이 패륜은 법적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유류분이 안 된다는 거지 상속권이 헌법불합치니 상속권을 상실시켜라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낸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그런데 다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

○서영교 위원 그 말씀이 맞습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예, 맞습니다만 그런데 상속인만……

○서영교 위원 그러면 한 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에 대한 헌법불합치이지 상속권에 대한 헌법불합치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예. 그런데 다만 상속인만이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과 관련이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저희가 하는 겁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구하라법이 처음 나왔을 때 법무부에서 가지고 왔던 법 중에, 바로 이 헌법불합치를 얘기하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하지 않을, 소송을 걸 수 있게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지 않아서 우리가 그 부분 다 빼고 합의가 된 거였거든요.

부모는 자식에게 상속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그래도 나를 잘 돌보고, 나를 아예 돌보지 않은 패륜은 우리가 좀 나눠는 줘야 되겠지만 부모는 상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 법을 넣어서,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불합치 낸 것도 아닌데…… 부모가 내 새끼가 두 명이 있으면 전처 자식도 상속 자격이 있고 지금 현재 자식도 상속 자격이 있고 사실혼의 여인에게서 낳은 사람도 상속 자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여인하고는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그 자식에게는 상속을 하지만 전처 자식과 전전처 자식 정도는 정말 나를 돌보지도 않았고 간혹 와서 양육비 달라고 떼도 쓰고 어떻든 부모에 대해서 나쁜 소리도 해 대고 그러면 상속 자격이 없는 거냐.

그래서 이 상실선고를 존속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나올 수 있어서 그때도 이 부분은 빼고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키우지 않은 경우만 넣자라고 해서 그렇게 합의가 보아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 사례를 통해서 지금 좋은 취지로 ‘부모가 패륜했던 자식에게는 유류분을 안 줄 수 있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 낸 건데 지금 우리는…… 다른 의원님들의 법안에는 예를 들면 부모가, 소생이 여럿인데 그중에 다른 경우에 나에게 잘 못해, 그러면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라서 저는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 주고 가시면 좋겠다, 지난번에도 아마 법사위에서 이 부분은 빼고 가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유류분이 헌법불합치면 그 부분만 넣고 가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기관에서 의견 주실 게 있습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하여튼 저희는 기본적으로 유류분이라는 게 상속인만이 유류분 권리자가 되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부분 유류분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시행시기를 헌법불합치 결정에 한 그 시기에 좀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직계존비속, 배우자를 어느 범위까지 할지에 대한 것은 사실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만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선고와 별도로 직계비속, 배우자에 대한 유류분 상실선고를 도입하는 방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속인이 유류분 상실선고를 받아도 유류분을 제외한 상속인으로서의 상속분이 남아 있어서 패륜 상속인에 대한 완전한 상속

분 박탈이 조금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도 정비가 필요해서 시행시기를……

○**서영교 위원** 제가 기조실장님께 질문을 하면, 상속분이 있는데 유류분을 요구할 때는 상속분을 못 받으니 유류분이라도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유류분을 달라고 합니까? 유류분을 최소한 보장해 달라고 하는 것은 상속을 아예 받을 수 없으니 유류분만이라도 보장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 유증으로 모든 재산을 어떤 사람에게 상속하기로 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유류분을 상실시키면 그 사람은 재산을 전혀 받을 수 없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다른 분의 유류분이 상실되더라도 나머지 상속분은 그대로 상속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생기기는 합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그러면 반박을 한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피상속인이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을 모두 다 기부를 한 경우지요. 기부를 한 경우에 자식이 ‘나 상속권 있으니 내 상속분을 주세요’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상속분이 안 주어지니 법원에서 판단해서 ‘못 줘요’라고 하니 ‘그러면 유류분이라도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이지…… 지금 말씀은, 제가 법무부랑 상의를 했는데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류분은 상실시킬 수 있는데 상속분은 받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원이……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고대에다 기부를 했어요. 아들이 달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유언으로 고대에 전부 다 갔습니다’라고 하니 ‘그러면 유류분이라도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유류분을 이 자식이 패륜이 아니면 주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의 판결이잖아요,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자식이 정말 패륜이고 부모에 대해서 상해도 가하고 뭐를 또 가했어요. 그럴 경우에 안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 상속이 무조건 안 된다, 모두 안 되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헌법재판소 판결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예,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아주 예외적인 얘기들을……

○**서영교 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논리를 계속 법무부와 법원도 이야기하셨고 그 근거에 의해서 유류분은 상실시킬 수 있는데 상속분이 남아, 이런 예를 얘기하면서 상속분까지 상실시켜야 돼라고 하는 제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해외 입법례를 위원님들께 나눠 주시면 좋겠는데 원래 저의 구하라법은 상속인 결격제도였습니다. 상속인 결격제도는 미국이나 대만에 있고 그리고 상속인 결격과 유류분 박탈을 같이 쓰고 있는 나라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한데 상속인 상실이라고 합니다. 상실선고를 줘서 금방 말하듯이 부모가 자식에게 나는 상속을 이 자식은 줄 수 있지만 저 자식은 못 줘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진 게 일본의 막부시대에 있던 폐제제도라고 합니다. 여기 일본과 프랑스를 넣었는데 프랑스는 제가 아무리 읽어 봐도 그 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 있던 막부시대 폐제제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그런 상실이라고 하는 제도를 다른 나라에서 쓰고 있는 나라가 있느냐라고 아까 물었더니 법원 차장님께서 일본과 프랑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프랑스는 제가 보니까 다른 사례인 것 같고 일본 정도 있다는 게 그동안 학계의 정리였거든요.

지난번에도 그 논리를 여러분이 구하라법 논의하실 때 해서 그 내용을 법무부가 갖고 왔었는데 그 내용을 빼고 존속이 아이를 키우지 않았을 경우만 우선 해당되게 하자라고 해서 그때 합의를 봐 주셨고, 저는 결격을 주장했지만 상실선고라고 하는 제도로 합의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존속이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오셔서, 대한민국에서 유언이라고 하는 제도가 충분히 남아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부모는 자식에게 남기는 게 저는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뒤흔드는 거라서 반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것을 조금 먼저 얘기하고 잠깐 쉬는 시간이라도 거쳐야 이 내용을 합의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하고 나면 이게 잘 안 될 거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다른 법률은 논의를 못 하지 않습니까?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합의할 수 있게 얘기를 해 나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1대 때 합의했던 수준까지 하고 나머지를 그다음에 보강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상범 위원**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차장님, 아무래도 상속권이나 민법 관련된 것은 법원이 고도의 전문성이 있으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21대 합의된 것에서 상실권자를 조금 확대하는 안을 만든다 해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직계존속에 의한 부양 불이행이 가장 메인이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도 결국은 상속권 상실권자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외려 법 제도 전반적인 취지에는 맞기 때문에 법원도 정점식 의원안의 형태로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법이 갖고 있는, 구하라법의 성격 그 자체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이 직계 존속에 의한 부양의무 불이행 또는 유기·학대 이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게 주가 될 수밖에 없고 법무부나 행정처에서 안을 그렇게 수정을 한다 그래서 구하라법의 성격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앞의 부분 합의가 다 가능하다면, 아까 말했듯이 세 번째 위헌결정 부분은 내가 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오전 중에 논의는 불가능하고 앞의 두 부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법무부, 법원행정처에서 한 안을 수용해서 정리해도 구하라법으로서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영교 위원께서도 기본적으로 그 말씀이 맞으신데 결국 현재 결정안을 지금 우리가, 비록 유류분에 관한 현재 결정이지만 거기서 결국 상속권 문제가 논의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고 양 기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양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고 합의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영교 위원** 위원님 의견에 많이 공감하면서, 저는 존속이 떠나셨을 때 자식들의 상속권 상실 이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결정 낸 것도 아니고 이런 예가 거의 없는데 이것을

이때다 하고 가지고 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일본이 막부시대에 자기 아들 둘 중의 하나, 셋 중의 하나를 결정하고 거기다가 올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폐제제도라고 하는 건데, 일본의 상속제도 중에 우리가 호주제도는 갖고 왔지만 그 제도는 안 갖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지난번 법무부가 짹퉁 구하라법을 가지고 오면서 그 제도를 가지고 왔던 거지요. 그래서 그것 충분히 논의해서 그 제도를 뺀 건데 지금 마치 논리상 맞는 것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류분을 불합치 냈는데 상속에 대해서 불합치 낸 것처럼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손질을 보셔 가지고 유류분으로 하든지 아니면 유류분을 다음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 저는 동의가 가능하지.

그런 예가, 아버지가 소송을 걸면 되지는 않겠지만 배드 파더스, 배드 마더스 많은데 전처소생…… 현재 다른 사람하고 나쁜 관계, 안 좋은 관계에 있으면서 전처 자식들은 내가 상속권을 상실시키겠다라고 하면 법이 판단해서 이기게는 해 주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남용할 수 있는 제도를 뭐 하려 만드냐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떠나면서 유언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유언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다른 단체에 기부하거나 그 유언이, ‘그래도 내 상속분이 있으니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상속분을 법원이 못 주겠어라고 하니 ‘그러면 유류분이라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판단해서 상속을 못 줘, 그런데 유류분이라도 달라 할 때 이 현재의 판결에 의해서 유류분을 못 주는 거지. 왜 여러분은 사고가 유류분은 못 주는 상실선고, 그러니까 유류분 상실선고를 제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제도 안에서 유류분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법을 고쳐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유류분 상실선고제도를 갖고 왔기 때문에, ‘유류분 상실선고제도는 만드는데 어떻게 상속 상실을 안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법원은 ‘유류분 상실제도를 두어야’가 아니라 ‘패륜이나 잘못된 경우에는 유류분을 주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강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해야지. 지금 가족이 많이 붕괴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제도를 두면 ‘나 저 친구한테 상속 안 할 거야’라고 부모가 살아생전에 소송을 걸고 그러면 작은 아이들은 다 당하고 상처만 입고 끝내 사이는 안 좋겠지만 이 제도를 우리가 왜 만드냐는 겁니다.

원래 법무부는 무슨 제도를 만들어 왔느냐면 구하라라고 하는 자식이 엄마의 양육을 받지 못했어요. 똑같은 제도예요. 그런데 살아 있으면서 구하라라고 하는 아이가 죽기 전에 ‘나 저 엄마한테 상속 안 줄 거야’라고 소송을 걸라고 해 가지고 왔던 거예요. 살아 있는 부모나 살아 있는 어린 아이나 둘 다 소송을 걸라고 해서 상실선고제도를 갖고 왔고 살아 있는 아이가 어떻게, 내가 언제 죽을 줄 알고 부모에게 소송을 걸겠습니까?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해서 그것도 빼지고 부모가 상실하는 것도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결격을 얘기했는데 상실선고로 갖고 와서 그것들을 다 갖고 왔다, 그걸 썩 다 빼고 그것만 합의 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유류분이라고 하면서 그때 살아 있던 것 또 가지고 오신 겁니다.

이 제도는 제가 보기에도 다른 나라에는 없고요 일본에 있는 제도입니다. 그걸 가지고 온 제도라서, 이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학자 간에 분쟁이 있어서 그동안 마우나리조트, 천안함,

세월호 때 매번 이 법이 나왔지만 통과되지 않았던 거고 구하라 양이 나오면서 온 세상이 떠들썩하고 ‘아직도 구하라법이 안 돼?’라고 하니까 법무부가 가져왔던 안이 그런 제도였는데 그런 제도가 다 없어지고 이것만 남았는데 이번에 또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도, 이것 우리가 이렇게 하면 괜히 가족들 간에 살아생전에 부모의 소송만 많아지고, 부모는 죽기 전에 유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데도 아직 해 보지 않은 건데 굳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유류분 상실선고제도 이런 것이 아니라 유류분 제도를 손질하면서 ‘이 유류분은 폐륜인 경우에는 주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것 법원이 판단하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 하려고 사실 법사위에 왔습니다.

○**유상범 위원** 잠깐 정회를 좀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다른 위원님들도 혹시 토론하시거나 질문하실 것 있으면 이번에 한꺼번에 하신 다음에 논의하시지요.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차장님, 민법 1004조에 상속인 결격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사유도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경우 그다음에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상속 원인을 발생시키려고 범죄행위를 한 경우지 않겠습니까? 3호가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또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그다음에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제도랑 지금 현재에서 유류분에 대해서 상실을 두지 않은 거랑은 취지는 같아 보이는데 차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상속 결격사유는 훨씬 더 중한 사유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에 좀 못 미치는 폐륜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상속권을 상실하도록,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재판을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류분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상속권을 상실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낮은 단계의 정책 결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구하라법에도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그다음에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라고 규정을 해서 결격사유와는 다르게 약간 낮은 정도의 폐륜행위에 대해서 상속권 상실선고를 법원을 통해서 하도록 한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취지는 같아 보이거든요. 다만 너무나도 중대한 것은 아예 결격을 시켜 버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정도의 폐륜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을 통해서 상속권 상실선고를 받게 하는 거고. 그런 취지인데 지금 서영교 위원님이 말씀한 이 구하라법은 모든 위원님이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취지에 다 동의하시고. 그다음에 시행시기와 관련해서 기관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의견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유류분 규정한 것은 단순위현이니까 이것은 저희가 삭제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개정안이나 대안이 있는 것 같지

도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삭제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유류분인 경우에도 구하라법 수준에 해당하는 정도의 심한 패륜행위, 부당한 대우 한 경우에는 유류분까지 상실을 시키자 그런 의미인 거지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가리지 않고, 쌍방향으로?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정점식 의원안에 따르면, 사실 현재 결정의 취지는 서영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유류분 결격사유를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류분의 결격사유를 유류분만 배제할 것인지 더 나아가서 상속을 아예 못 받도록 할 것인지는 정도의 차이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가장 센 것이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것 같고요.

상속인의 결격을 재판받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법률안인 것 같은데요,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쌍방에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상속권 상실선고제도를 두게 할 것이냐…… 사실 상속권 상실선고제도를 둔다라는 것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법원에서 상속권 상실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한다고 모두 결정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 대해서 직계존속과 마찬가지의 상속권 상실제도를 둘 것인지 아니면 그것보다 낮은 수준의,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류분만 배제를 하거나 아니면 유류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아니면 유류분 배제와 관련된 재판을 받게끔 하거나 하는 입법정책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어 보여서요.

즉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해서 현재에서 얘기한 유류분 결격사유를 두지 않은 위헌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 두 번째,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는 취지는 궤를 같이하는데 합의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좀 더 논의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판단은 들거든요.

그다음 아까 유상범 간사님 말씀하신대로 세 번째는 좀 더, 기여분 제도는 전체를 다 바꾸는 거니까요. 그것은 더 논의가 필요해서 오늘 당장 할 것은 아니고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렇습니다. 행정처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은 세 번째, 기여분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나온 준용 규정을 통해서는 위헌 부분이 해소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고한 논의를 통해 위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법의 시행시기도 2026년 1월 1일 날 같이 적용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논의를 좁혀서 일명 구하라법, 21대 때 다 합의했던 법을……

서영교 위원님은 법 통과 후 6개월 이후인가요, 아니면 2026년 1월 1일인가요, 시행시기인가요?

○**서영교 위원** 이게 20대부터 얘기하고 21대를 지나오고 우리가 그러는 동안 수없이 많은 사연들이 생겼습니다. 이 법만 통과돼도 된다고 해서 21대 때 다 합의했는데, 그러면 이 법 가지고 그냥 바로 시행을 하면 되지 굳이 헌법불합치가 났으니, 그러면 헌법불합치인 경우는 빨리 우리가 준비를 해서 그다음에 맞춰 시행을 하면 되지 그 오랫동안 제대로 안 하고, 그 당시에 그래 놓고 헌법불합치가 났으니 옳다구나 하고 1월 1일로 미룬다? 저는 사실은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임무 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저는 법사위에 없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그때 법원행정처 차장님과도 통화를 했고 ‘위원님, 준비가 잘된다면 더 당길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시행시기를 1월 1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현재가 1월 1일까지는 고쳐라라고 했기 때문에 1월 1일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불행하고 법에 안 맞는, 상식에 안 맞는 일들을 했으면 빨리 진행을 하면 되지…… 그래서 준비하는 시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6개월 정도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굳이 1월 1일로 해야 된다면 저는 거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다 됐으면 또 이런 일 안 생기게 할 수 있으면 빨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의 저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잘 안 된 논리 가지고 계속 가지고 왔으면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해 달라고 하고…… 구하라 씨의 경우는 벌써 재판 끝났습니다. 제가 ‘재판을 한 번 더 하시지요’ 했더니 구호인이라는 그 오빠나 가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엄마인데 재판을 통해서 더 나쁜 관계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재판하지 않고 가자는 게 결격으로 했던 이유고요. 이걸 계속 만드는 것은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개월 후에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 통과 취지가 사례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저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두 분, 차장님께 그리고 실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이 개정시한이 2025년 12월 31일이라고 돼 있는데 그 안에 고치라는 것이지 그때 고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렇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예, 맞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4월 25일 날 위헌결정이 있었던 이후로 법무부에, 행정처에 훌륭한 법률가들 많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내년 12월에 가서 고치려고 지금까지 방기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훌륭한 분들 계시니까 빨리 마련하시는 걸로 하고, 서영교 의원님 안대로 연말까지 그게 보완적으로 또다시 통과가 돼서 같이 시행되게 하실 여건 안 됩니까?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 노력하시면 즉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왜 내년 연말까지 기다리려고 하시는지 그 자체를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결국은 법무부하고 행정처가 서둘러서 바로 또 후속 입법이 이루어져 가지고 같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쟁점이 다 다른 것을 떠나서 사실 서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계존속을 제외한 직계비속과 배우자에 대해서 상속권 상실을 둘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유류분을 제한하는 형식의 약간 마일드한 것을 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논의해서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기여분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되게 막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박균택 위원** 그렇더라도 그것을 내년 연말까지 고치면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하고

금년 연말까지 고치면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하고 별씨 접근하는 자세가 다를 것이고, 오래 기다린다고 해서 좋은 답이 나오고 빨리한다고 해서 나쁜 답이 나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위헌결정을 했던 수많은 논거들이나 각계의 의견들을 취합하면 거기에 상당 부분 다 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무부하고 행정처가 좀 서둘러 주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헌법불합치를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꼭 그날 해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전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우선 저희는 입법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게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후속 법안의 시행시기도 또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다면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했었을 때 정합적으로 법이, 민법이라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중대 기반법이 개정이 된다라는 시점에서는 그와 같이 시행시기를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것에서 의견을 내 봤습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논점이 정리가 되면……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게 있는데……

○주진우 위원 저도 하나만, 토론해 주시지요.

아까 제가 계속 들어 보니까 서영교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다…… 지금 법안 취지에 다 동감이 돼 있는 상태인데.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구하라법만 먼저 시행됐을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 짧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사실 민법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반 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구하라법만 먼저 시행이 되고 나머지 법들이 그냥 헌법불합치 상태로 있을 때 실질적인 문제점들이 막 발생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문제점들이 아주 극히 예외적인 사유냐, 아니면 웬만하면 또 일어날 수 있는 사례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무실장님이나 누가 사안을 잘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그 사례를 하나만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사례들이 한 두세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시들이? 그런 것들은 서면으로라도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기 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따로 시행됐을 때 가장 우려하는 사례가 뭡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법무부법무실장 구상엽 위원장님, 법무부 법무실장입니다.

위원장께서 지시하시면 짧은 소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법무실장 구상엽 먼저 서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국회에서 협의 과정이 있었고 현재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만들어져서 국회 통과 직전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부의 기본 입장은 지난 국회에서 여야 그리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합의한 안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서영교 의원님의 안은 시행시기가 달라졌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합의안을 만들 때 2026년 1월 1일로 하는 그 취지가, 현재에서 위헌결정이 난 그

취지는 모두 다 반영이 돼서 법을 정비하는 마지막 선, 테드라인으로서의 의미를 가진 것이고, 그 대안이 먼저 통과되더라도 그 외의 나머지 위헌결정을 반영해서 시행일 자체는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한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돼서는 만약에 위헌결정이 난 부분에 대해서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법이 시행이 되고 나머지 정비한 법이 나중에 시행이 된다면 그것은 정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합의안의 정신대로 날짜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그 전에 나머지 법령의 정비가 다 완비된다고 그러면 앞당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위원 잠깐만요. 그 내용은 다 아는 거고요.

지금도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문제점이 적으면 3개월 뒤든 6개월 뒤든 구하라법이라도 빨리 시행하자는 게 서영교 위원님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서영교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됐을 때 어떤 불합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까? 그걸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법무부법무실장 구상업 그 부분에 한정돼서 말씀드리자면 지난 합의안대로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유류분 부분이지 않습니까, 현재에서 판단이 된 부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취지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없이 이루어졌을 때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지금 저희 법무부에서 걱정하는 바입니다.

○장동혁 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현재의 결정을 그냥 문언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 물론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이 다 정비가 되면 좋겠지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영교 의원님 안대로 가더라도 저는 크게 법률적인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통과시키고 나서 2025년까지 이런 패륜적인 행위를 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해서 유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 법을 하나 또 통과시키면 되고요. 기여분에 대한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상속 결격, 저 부분은 이미 위헌결정 났으니까 법조문 정비만 하면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두 가지인데 저는 그렇게 시행했을 때, 모든 것이 현재의 취지대로 다 정비가 된 다음에 같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도 어쨌든 2025년까지 기여분이든 유류분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니까 우선 급한 서영교 의원님 안인 구하라법만, 직계존속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 것을 그대로 뒀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법적 충돌이 있어서, 현재의 취지에 반해서 2025년까지 이게 살아 있음으로 인해서 크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상정하기가 힘들거든요.

다만 기여분도 문제가 있고 뭐도 문제가 있다고 하니 다 같이 한꺼번에 해서 정리하면 좋기야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먼저 시행한다고 해서, 행정적 준비가 필요한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법 시행으로 인한 법 효과 발생으로 인한 문제는 저는 크게 상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성윤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21대 때 논의 과정을 보면, 얼마나 사회적 요청이 많았으면 12건의 법안이 제출

됐겠습니까? 또한 세 차례에 걸쳐서 법안 심사가 이루어져서 합의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현재의 결정만으로 이 법을 다시 논의하고 시행시기도 2026년 1월로 한다는 것은 조금 뭐랄까, 우리가 임무를 방기하는 느낌이 듭니다.

다행히도 우리 국회에서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유류분 상실선고제도 관련해서 이미 백혜련·권칠승 의원안이 발의가 돼서 전체회의에 상정된 상태이고요. 기여분 규정 강화 부분은 박지원 의원이 발의해서 현재 있으니까 서영교 의원 구하라법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국회에 지금 올라와 있는 법을 추후에 협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영교 의원님 안을 적극 지지하고 빨리 통과돼서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혁 위원** 기본법이니까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지금 우려하거나 견해차가 있다고 하는 것은, 현재는 유류분에 대해서만 패륜적인 경우에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인데, 지금 우리는 유류분 말고 그 범위가 더 넓은 상속분 전체에 대해서 상실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의 결론과……

물론 현재의 내용에 정확하게 맞는 입법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그렇게 올려서 상속분 전체에 대해서 이런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상실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건 국회에서 충분히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생각입니다. 제 해석이 틀렸습니까?

○**법무부법무실장 구상엽**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의 취지가 유류분조차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분에 대해서도 더 엄격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과 유류분과 상속분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두 개의 시각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가 이루어졌는지 약간의 걱정이 있을 뿐이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난 국회에서 합의된 안에 대해서 먼저 통과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소 이견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시행시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난 국회에서 시행시기를 그렇게 합의하신 취지와 지금 논의하신 부분이 어떻게 잘 조화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님 안을 따르더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경우를 저도 상정하기 어려워서 아까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일괄해서 다 구제하지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빨리 구제한다는 취지가 저는 맞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헌법불합치결정 난 사안 중에서도 국회에서 논의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헌법불합치 시기를 넘기는 경우도흔히 있거든요. 그런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시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구하라법을 먼저 시행하는 방안이 저도 합리적일 것 같고. 거기에 따라 실질적으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셔야 저희 위원들이 한 번 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차장님, 결국 지금 우리 위원들이 논의할 부분이 딱 하나로 귀결이 돼요, 사실은.

결국은 현재에서 헌법불합치결정한 패륜적 행위에 대해서 유류분 상실하는 것 자체를 이 정도 되면 상속권 상실로 가야 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상속권 상실에 포함시키느냐

별도로 유류분 상실로 가느냐 그 부분은 결국 입법정책적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무부나 행정처는 그와 같이 유류분 상실을 규정하는 것에 비춰 본다면 상속권 상실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더 높은 범위의? 그런 의견을 내신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정합성을 따져 봤을 때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결국 선택은, 우리가 여기서 판단은 그것만 결정해 주면 나머지는 이미 다, 지금 대습상속은 어차피 인정해 줘야 돼서 그건 개정을 해 줘야 되는 거고, 상속권 상실이 되더라도 자제분에 대한 대습상속권은 인정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맞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그건 개정을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게 존속만으로 됐을 경우에는 대습상속에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유상범 위원** 생기지는 않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유상범 위원** 그런데 그걸 확대했을 때 유류분 상실, 패륜적 행위에 대한 부분을 상속권 상실로 갔을 때는 대습상속 문제가 나오니까 당연히 그 부분까지 같이 개정해 줘야 되는 문제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결정할 부분은 유류분 상실에 나온 패륜적 행위를 상속분 상실로 갈 거냐 유류분 상실로 갈 거냐만 여기서 결정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선택에 따라서 존속으로 한정하면 그냥 서영교 의원안으로 가고 나머지는 손댈 게 없는 거고, 현재 결정을 반영해서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으로 가면 당연히 대습상속 관련 규정 개정이 들어가는 거고.

○**장동혁 위원** 저는 이 결정이 난 이후에 대안이 만들어져서 논의가 돼 왔던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나머지를 다 같이 정비해서 정합성을 갖춘 상태에서 출발하자라고 하는 그것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당겨 보자라고 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만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상속 상실시키자라고 다 합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2025년 12월 31일까지 어떻게든 대안을 꼭 마련해야만 하지요. 그런데 지금 먼저 출발하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먼저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해도, 다만 행정처에서 아니면 법무부에서 준비할 시간은 두고, 그 시간만큼만 두고 먼저 출발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시행시기 관련해서 한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21대 논의에서도 이런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시행시기를 2026년 1월 1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만 개정이 되니까 먼저 시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진행 경과를 보게 되면 직계비속과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 저희가 말씀드렸던 기여분과 관련된 부분도 또 다른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개정 작업이 이루어질 때마다 계속 시행시기를 달리한다고 본다면 굉장히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

고, 한 사건이 발생을 했었을 때 언제 사망했느냐에 따라서 적용 범위가 다 달라지는 굉장히 혼선이 생길 수 있다라는 문제점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준비하는 기간도 좀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물론 서영교 위원님이 질책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미리미리 법원에서 왜 준비를 못 했느냐라는 말씀도 하시겠습니까만 저희가 새로운 형태의 재판을 만드는 이러한 입법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준비를 할 때 시간이 좀 걸린다는 측면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우려를 하는 것은, 만약에 시행 전에 사망을 해서 이 개정된 법률을 적용 못 받는 억울한 사례가 생길 것이 지금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즉 2026년 1월 1일 시행을 했었을 때 그 이후에 사망을 한 경우에만 적용되면, 물론 패륜행위는 그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 상반기나 이때 사망을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법의 적용을 못 받는다라는 그러한 법의 공백 상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이 났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부칙 규정에 반영을 한다면 그 억울한 부분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헌법불합치로 인해서 적용 시점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발생한 부분에도 소급 적용을 하는 그러한 형태의 입법례도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우려하시는 그와 같은 억울한 상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까지도 말씀드려 봅니다.

○장동혁 위원 지금 차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그래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시행시기가 달라지면 나중에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실 부분, 대습 상속 부분 그다음에 유류분 부분, 기여분 부분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면 법률 적용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건데 시행시기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시기나 아니면 다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그것을 조금 더 완화시키거나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 범위를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을 한다랄지……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방법으로, 그 혼란을 조금 더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어서 그런 방법을 취해서 혼란이 전혀…… 같이 출발하는 것보다야 불편하겠지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지금 당장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피해 구제를 생각한다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그래도 먼저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전현희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처 차장님께서 법의 시행시기를 서영교 의원님 구하라법만 따로 뺐을 때 이 법의 정합성,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세 가지 정도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서영교 의원님 안은 존속에 관한 안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비속이나 유류분, 기여분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 그것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이런 취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존속에 관해서만 패륜행위를 했을 때 상속권을

결격사유로 했기 때문에 일단 비속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에 규정이 없고, 그러니까 이 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논거가 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새로운 재판이 발생을 하니까 법원에서 그걸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도 이 법만 통과됐을 때의 문제점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은 그냥 결격사유지 법원에서 재판하는 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법원에서 유류분 상실선고를 하면 재판 준비를 해야 되지만 그것은 이 법에 대한, 구하라법에 대한 논거는 될 수가 없고.

또 하나, 억울한 피해자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법의 공백 이런 부분도.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들어 봐도, 구하라법만 먼저 통과를 시키고 시행을 빨리 한다 하더라도 여기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 들어 봐도 별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렇지만 다만 현재에서 이런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노력은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해소하는 노력과 구하라법과 배치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하라법은 오늘 먼저 통과를 시키고 시행시기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앞당겨서 시행을 하고. 그사이 기간에, 2025년 12월까지 여기에 계신 법무부나 법원이나 국회에서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빨리 법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입법을 하면 얼마든지 이게 다 공존 가능한 해결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하라법을 먼저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은 발생할 수 있는, 지금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존속에 의한 패륜행위에 대해서 피해자가 발생할 것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면 그 피해자를 구제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구하라법 먼저 통과시키고 빨리 시행을 하고 나머지 법의 공백 해소는 우리가 모두 노력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 그렇게 하면 다 원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위원 저는 서영교 위원님이랑 전현희 위원님 생각이랑 같았는데 지금 법원행정처 차장님이 대안으로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일리가 있거든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다 아시겠지만 사실 시행시기를 고민하는 게 민법은 완전히 기본법이다 보니까 법의 적용시기에 따라서 직계존속 다르고 비속 다르고 유류분 다르고 상속 다르고 하면 진짜 정신없어서 법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은 같은 시기로 맞추는 게 원칙인데 중간에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을까 봐 먼저 한번 시행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 말씀은 시행시기를 2026년 1월 1일로 다 맞추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이후에 사망한 사건까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만들어 두면, 실제 예를 들어서 한 몇 개월 뒤에 구하라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마 또 신청을 하겠지요. 그러면 그다음에 아마 서로 소송이 붙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긴 하지만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만 규정을 해 두면 이분들이 법적 소송으로 갔을 때 결국 그 시행 전에 발생했던 사건들까지 다 구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구제 범위는 서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제 범위를 다 포섭하면서도 지금 법원과 법무부가 우려하는 바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대안에 대해

서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말씀하신 그 부분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잠깐 한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법무부법무실장 구상업** 지금 주진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법원 그리고 전문위원실하고 그 보완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결정일부터 개정법의 시행일 사이에 벌어지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4년 4월 25일 이후 그리고 법 시행일까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 부칙안도 마련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면 저희가 이 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배포해서 논의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부연설명 잠깐 드리면 저희가 시행시기를 조정하자는 게 안 하고 방기하고 미루겠다는 그게 아니고 쟁점들이 있으니까, 사실 준비하고 통일적으로 적용되면 가장 좋고 이상적인데 그러면 서영교 위원님 말씀처럼, 다 우려하신 바처럼 그러면 그동안 법무부 아무것도 노력 안 하고 그사이에 발생하는 걸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 헌법불합치결정이 나고 시행시기까지 간격이 있을 때 그사이에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개정법을 적용하는 그 과정에 경과규정을 뒤서 해결할 수 있는 부칙들이 어느 정도 준비 돼 있고 실제 그것에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헌결정 후 시행 전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 것이 헌법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다라고 해서 헌법 결정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고려도 가능한 대안을 저희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문제기는 한데.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좋아요. 그러면 일단 그런 부칙, 경과규정에 대한 안을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예.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지금 한번 받아 보시는 것은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지금 부칙, 경과규정을 한다는 것은 대안 마련한 안을 기초로 해서 준비한 거지요, 기존 구하라법을 가지고 준비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될 텐데.

○**주진우 위원** 기존 구하라법만 하더라도 적용 가능한 것 같은데요.

○**법무부법무실장 구상업** 그렇습니다. 모든 경우에 적용 가능한 부칙으로서 한번 작성 을 해 봤습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실제 서영교 의원님 안으로 하고 시행시기를 늦춰도 적용 시기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최대한 반영하고 저희도 준비하는 과정이나 법원의 실무까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1001조가 뭐지요? 거기 1001조, 1003조 2항…… 1004조의2 이게 구하라법이고요. 1010조……

기여분까지 포함한 겁니까?

○**유상범 위원** 이것은 대습상속.

○**법무부법무실장 구상엽** 지금 이 안은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님 안이 먼저 통과되는 걸 전제로 한다면 준용하는 기준, 적용하는 적용조문에 대해서는 조금 손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1001조가 뭐예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1001조는 대습상속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1003조 2항도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1003조 2항은 배우자에 대한 것……

○**소위원장 김승원** 1010조는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1010조도 대습상속분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다 대습상속이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예. 1003조는 배우자 부분이고요.

○**소위원장 김승원** 이제 합의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선 법안심사자료 7페이지를 보면 시행시기에 관한 부칙이 있습니다. 1조에 보면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미래등기 체계, 등기 관련된 민법 규정의 개정 시기와 맞추느라고 그래서 1월 31일로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만,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21대 때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시행시기입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를 보시면 헌법불합치 난 것 중에서 첫 번째, 1항 단순위헌은 그냥 삭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여기 자리에서도 합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항 기여분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법원에서도 재판하면 기여분은 잘 인정 안 해 주잖아요, 흔히 있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3항은 좀 천천히…… 이것은 상속체계를 완전히 혼들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3항은 오늘 합의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안 했고요.

2항은 유류분과 관련된 상실 규정인데 이것은 아까 이성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개정안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빠르면 6개월 안에도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2항은 추가로 계속 논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구하라법과 관련된 시행시기와 그다음에 9페이지의 1항 관련된 단순위헌 그것에 대해서만 합의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상범 위원** 아니,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요 유류분 상실로 갈 것이냐, 상속 상실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면…… 상속 상실로 결정되면 이 부분은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유류분은. 그런데 그 부분을 정리해 주지 않고 하면 기본법이 돼서 구하라법이 시행됐는데 몇 달 있다가 갑자기 상속 상실제도를 또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여기서 정리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지금 저쪽 법원이나 행정처는 유류분 상실과 관련된 패륜적 행위 부분까지 상속 상실로 포괄시키자는 대안이 나온 거고, 그 부분에 찬성을 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위원님들은 그냥 구하라법에 있는 직계존속만 얘기하자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유

류분 상실로 됐을 때 결국은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상속 상실로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유류분 상실까지 인정하는 거라면 패륜적 행위는 차라리 상속 상실로 가버리는 게……

직계비속에 대한 부분도 비난이 크지만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 대해서 한 부분의 그 비난이 상대적으로 작습니까? 비속의 직계존속이라는 비난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부분까지 상속 상실로 포괄해서 가는 게 어떻느냐.

○**소위원장 김승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 부분은 아직 합의가 안 돼 있고 또 유류분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서영교 위원님 말씀에 따르더라도 시행시기를 법 통과 6개월 후로 하자는 거잖아요. 그 안에 충분히 논의가……

○**유상범 위원** 서영교 위원은 시행시기는 본인이 양보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2026년 1월 1일 자로 하는 것도 인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소위원장 김승원** 그건 아니신 것 같은데……

○**유상범 위원** 아니, 그렇게 하셨지.

○**서영교 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아까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일단은 먼저 가도 된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주진우 위원** 그런데 저는 부칙이 있으면……

○**소위원장 김승원** 서영교 위원님 일단 말씀……

○**서영교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가 유류분에 대한 판결을 내렸는데 상실선고제도를 갖고 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전체가 다 고민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법무부가 구하라법 내놓을 때부터 갖고 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 한 번 더 여쭤보면 이렇게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상실제도를 두는 나라가 어디 있다고 그랬지요?

이게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본밖에 없는 제도를, 그것도 막부시대에 있던 제도를…… ‘아주 패륜한 사람은 안 줘야 돼’ 이건 너무 맞는데 이 제도가 지금 우리 상속제도 전체를 혼들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저는 구하라법 때부터 가지고 왔던 법무부의 그 내용을 전부 다 다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법과 상속법이 엄청나게 부딪히는 이 과정을 또 갖고 와서…… 유류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를 냈는데 왜 상실선고제도를 갖고 오느냐.

제가 보기에는 ‘유류분이라도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은 상속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상속이 되지 않는 사람이 유류분이라도 달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유류분 상실선고제도를 넣으면서 ‘상속분은 갖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부분만큼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살아 있을 때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건 기본인데, 부모가 상속을 하는데 ‘내가 죽으면 상속에서 좀 차이를 두고 싶어’ 이건 유언이라고 하는 제도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저 엄마가 나를 안 키워서’라고 유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하라’라고 하는 제도가 들어온 거고요. 부모는 내 새끼 중에 ‘나를 정말 안 돌보고

패륜이야' 이럴 때는.....

○유상범 위원 잠시 정회하고 얘기를 좀 하시지요.

○서영교 위원 잠깐, 제 얘기 마저 하고요.

이럴 때는 어려워 유언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중에 유언을 하면서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고대에다 내 재산 다 줄 거야. 100억짜리가 있어. 다 줄 거야’ 그러면 자식이 ‘내 상속분 내놔’ 그래도 상속이 안 돼요, 유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유언이 제대로 안 됐어. 그리고 자식을 그냥 미워하기 때문에 안 줘, 그러면 상속 결정 주는 겁니다. 그런데 유언이 적용돼서 상속도 적용이 안 돼, 그럴 때 마지막으로 달라는 게 유류분인 겁니다.

이 유류분 제도는 유언을 하고 갔을 때 대다수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속권 상실은 유언과 상관없이 패륜인 자식이라고 하면서 지금 상속권 상실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유언을.....

지금 현재가 이야기한 건 유언하고 그리고 ‘내 새끼 중에 여기만 주겠어’라고 했을 때 내 최소한의 유류분을 달라는 건데 패륜을 했으면 유류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상속에는 상속권을 벌써 빼앗아 간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최소한의 유류분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상속도 뺏어야 돼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부모가 상속할 수 있는 부분은 상속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유언을 통해서 좋은 데다 기부했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2개를 섞어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이런 제도는 일본밖에 없는, 그것도 막부 때 있던 폐제제도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그걸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고 간절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하라법 내놓을 때, 법무부가 그것 갖고 왔을 때 제가 ‘그러면 구하라법을 통과 안 시키는 게 낫겠다’라고까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다 합의 봐 줘서 춥혀 줬기 때문에 저희도 결격에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혁 위원 저는 이렇게 적용하는 부칙을 두는 것은 이 법의 시행시기와는 관련 없는 이야기고.

이렇게 다 맞추면 나중에는 사건 적용에 있어서 똑같이, 다음번에 다른 조항들을 개정 할 때 계속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자는 취지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시행시기를 2026년 1월 1일로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이미 상속받고 재산이 일실되면 2026년 1월 1일 이후에 다시 돌아가서 상실선고 해 봐야 재산이 다 일실된 이후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권리 구제가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시행시기가 아니라 이렇게 선고 시점, 현재 결정 시점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다른 것들도, 예를 들면 그 시점이든 아니면 이 법 시행일로 맞추든 어떤 일정한 기준으로 맞추면 그 뒤에 법 개정된 사항들을 적용할 때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고. 그것 때문에 이런 대안이 있으면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26년 1월 1일로 하자는 부분은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서영교 위원 조금 조정해서 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끼리 논의를 좀 하고.....

○**서영교 위원** 제가 만든 안은 제가 만든 안이 아니고요 여야가 그때 다 합의한 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이 날 때 ‘구하라법 통과’ 이렇게 나야지 거기 ‘헌법불합치에 뭐뭐뭐’ 이렇게 붙여서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구하라법 통과의 의미도 없고.

제가 말하는 구하라법은, ‘그 부모에게 돈 주지 마’가 아니라 ‘부모는 다 자식을 돌봐라’라고 하는 취지의 법을 만들기 위해서 구하라법이 있는 거지. ‘애 죽으면 갖고 가지마’ 이건 두 번째고 ‘부모는 돌보자’ 이 내용의 취지라서 기사도 그렇게 나가야 되고 그 취지가 다 반영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불합치는 그 뒤에 또 할 수 있으니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본 제 대안을 말씀드리면, 7쪽에 있어서 구하라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하면 법원에서도 재판 관련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법사위 법안1소위는 관련된 다른 대습상속이라든가 그런 규정을 2025년 6월 1일 전까지 통과시켜서 시행 일자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의 단순위헌은 삭제하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합의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사항만 우리 법안1소위에서 오늘 합의를 보시고 통과시키는 건 어떨까 이런 대안 의견을 드리는데요.

○**유상범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끼리 논의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위원님들끼리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법원에서도 2025년 6월 1일부터, 준비가 가능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장동혁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도 이게 선례가 된다면 헌법불합치결정 나고 나서 모든 법안에 대해서 그런 경과규정을 뒤 달라는 민원이라든가 요청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건 여기서 당장 결정하기에는 아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한 5분 뒤에 다시 모여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승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려면 우선 유상범 위원님 입장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 저희 논의한 것은 상속 상실권자 부분에 대해서는 21대에 먼저 합의된 것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분이고 현재 현재 결정에 따른 유류분 상실의 대상이 되는 패륜적 행위에 대한 부분과 관련되면 결국 법률적 정합성에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만 21대에 합의한 정신을 그대로 살려서 먼저 직계존속으로 한정하는 구하라법으로 가는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하고요.

다만 시행시기와 관련돼서는 말씀드렸듯이 위헌결정 부분을, 많은 부분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실과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시행시기가 달라지거나 그렇게 되면 결국은

법체계의 정합성 또 효율적인 판결 이런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026년 1월 1일 자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사이에 저희가 지금 문제됐던 각종 입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래서 서영교 위원님께서는 물론 빠른 시행시기를 희망하십니다만 결국은 그 사이에 기본법이 갖고 있는 특성상 잊은 개정을 해서도 안 되고 또 개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정교하고 다른 규정과의 정합성을 다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양보해 주시면 우리 법사위에서 추가 보완 입법을 진행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서영교 위원님 혹시, 말씀해 주시지요.

○**서영교 위원** 제가 질문을 좀 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장동혁 위원님 말씀처럼 원래 법무부가 가지고 온 1001조, 1003조 내용에 대한 것을 부칙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고 구하라법은 통과되어서 바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2026년 1월 1일로 그 시행시기를 놓으나 구하라법처럼 그런 자유로 아이가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 이 아이의 경우 아이가 남겨 놓은 보험금이나 아니면 어떻든 이 아이가 좀 컸다, 그래서 아이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경우는 아이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헌법불합치가 일어났으니 여기에 해당되어 진행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유상범 위원** 예, 그 얘기입니다. 경과규정을 통해서 하기로 한다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맞습니다. 경과규정을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구하라법은 진행이 돼서 1월 1일 날 똑같이 가지고 아까의 경과규정은 부모가 ‘나 여기다 상속 안 할 거야’라고 하는 경우도, 헌법불합치가 일어난 경우를 부칙에 넣는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그것을 빼고……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규정들은 빼고 일단 구하라법 관련된, 1004조의2만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1004조의2만.

○**서영교 위원** 1004조의2만 1월 1일로 시행한다. 그것은 다른 헌법불합치된 판결들이 시행되는 시기랑 같이 맞추기 위함이다. 단 이런 구하라법에 관한 내용인 경우에는, 헌법불합치 난 4월 25일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 적용된다. 그러면 6개월 이후에 적용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거지요.

○**유상범 위원** 그렇지요.

○**서영교 위원** 그러면 바로 적용할 수도 있는 거고. 사건이 일어났으면 바로 적용은 아니지만 법원에 가거나 재판에 갈 때의 경우에는 지금도 충분……

○**유상범 위원** 어차피 재판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서 그 법이 소급 적용될 수 있게 저희들이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장동혁 위원** 21대 합의한 내용 그대로에다가 적용 범위만 오히려 헌법불합치결정 이후로 더 넓혀 준 겁니다.

○**서영교 위원** 넓혀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에게 상속할 때는 돌아가시는 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불의의 사고로 떠나기 때문에 사실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지금처럼 하신다면 오히려 적용은 더 빨라질 수 있는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짧게 한 말씀 더 하실 분 하시고.

○**박균택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소위원장 김승원** 박균택 위원님, 짧게 해 주시지요.

○**박균택 위원** 그것 어떻습니까? 상속권도 넓게 보면 재산권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혹시 4월 이전으로 되돌리면 소급입법의 문제는 없습니까, 재산권을 소급입법으로 제한하는 문제?

○**장동혁 위원** 헌법불합치의 경우에 그와 같이 경과규정들을 둔 예가 있었고 그것이 특별히 문제 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 규정하고 그다음에 1112조 4호를 삭제하는 것, 시행시기는 2026년 1월 1일 그리고 경과규정을 두는 것, 이 4개로 정리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네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드리면, 말씀하신 게 다 위원님 그 지적을 반영해서 앞에 다 뺀 거고요.

○**소위원장 김승원** 짧게 좀 해 주세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예. 그리고 수정 경과규정에 유언집행자의 경우를 하나 추가해야 됩니다. 이게 공동상속인의 경우를 전제로 해서 만든 거라서 딱 한 단어, ‘유언집행자 및 공동상속인’이라는 표현만 넣으면 해결이 됩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그게 존속에 관한 건데 유언집행자 및……

○**주진우 위원** 이것 되게 실무적인 부분이거든요. 범위를 달리하는 게 아니라 유언집행자도 공동상속인이라 실무 때문에 표현을 다듬는 것입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예, 실무적인 거라 그 표현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우려하시는 바는 다 반영하는 거라 걱정 안 하……

○**소위원장 김승원** 실장님, 어디에 넣자는 말씀입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수정 가안, 저희가 아까 드린 거기……

○**소위원장 김승원** 2조 1항?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3조에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유언집행자 및 공동상속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위원** 문구는 좀 만들어서 주시면……

○**유상범 위원** 문구는 정리하라고 그러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상속인, 공동상속인, 유언집행자 그다음에……

그러면 공동상속인까지 없는 경우에 상속받을 것으로 확정된 자 그것도 넣는 거예요?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존속이라서요 부 또는 모 둘 중의 하나잖아요.

○**소위원장 김승원** 같은 조 4항에 따라 상속이 될 사람?

○**서영교 위원** 공동상속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해당이 안 될 텐데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디테일한 부분은 자세히……

○**서영교 위원** 디테일한 부분은 같이 다시 한번 보시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 취지를 반영하시고요.

서영교 위원님,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찬성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서영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형제자매 유류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상속은, 실제로 유류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이가 떠난 경우 보니까…… 지난번에 선원의 사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혼다섯 살이지요. 선원 하다가 죽었는데 그 엄마가 54년 만에 와서 돈을 다 갖고 가는데, 아버지는 한 살 때 죽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아버지 죽자마자 다른 데로 재혼해 버렸고요. 형이 하나 있고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또 형은 죽었어요. 누나가 있어, 그러면 누나가 상속을 받아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그 형제자매 유류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경우지요?

다 안 듣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죄송합니다.

○**서영교 위원** 다른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황과 선원의 사례, 제가 오늘……

그러니까 아이가 한 살 때 아버지가 죽었어요. 엄마도 재혼을 하고 갔어요. 형이 어른이 돼서 죽었어요. 누나 한 명만 남겨 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선원으로 실종이 돼서 죽었어요. 54년 만에 엄마가 이 돈을 다 갖고 가요. 그러면 받아야 될 사람이 누나거든, 누나.

그런데 아까 유류분은 형제자매는 배제한다 이러다 보면, 이 사람은 나이가 있긴 하지만 가족이 아무도 없어. 그런 경우도 우리가 법안에 넣어 놔야지 될 것 같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유류분 상속에서 형제자매는 뺀다 이러면 또 달라지는 경우가 돼서, 하여튼 그건 오늘 판단할 건 아니니까.

○**주진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행시기만 2026년 1월 1일로 하면, 보호 범위는 그대로 하면서도 그사이에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서영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형제자매 유류분 부분을 이번에 넣느냐 아니면 다음번에 넣느냐지요. 그것도 다음번에, 아까 유류분도 그냥 다음에 다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자매 걱정이 되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지금 정리된 것이 구하라법 관련된 조항은 통과시키되 1004 조의2 개정규정 및 부칙은 21대에 합의한 대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단순위현이기 때문에 정점식 의원님 안을 받아들여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되 서영교 의원님, 김성원 의원님, 정점식 의원님, 세 가지 안을 다 대안으로 해서 반영한 안으로 통과시키고 다른 법안은 폐기하고 그다음에 정점식·김성원 의원님 안 중에 필요한 것은 나중에 새로 내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아까까지는 대안으로는 안 하기로 한 것 아니었습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새로 내시겠다고 해서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서영교 위원** 잠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점식 의원안과 거기 있는 부분, 상실이나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원래 합의된 것만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정점식 의원안 중에서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부분은 단순위현이 났습

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그것은 당연히 반영을 해 줘야 되고 논의가 없기 때문에 2개의 법안을 같이해서 통과시키다 보니까 대안으로 통과가 되는 겁니다.

○서영교 위원 예,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6항 민법 개정안을 심사한 후 그 심사 결과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미래등기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5개 법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화실 전문위원님께서 의사일정 4항부터 6항까지의 법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8항까지의 개정안은 제21대 국회 우리 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등기 관할에 관한 특례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관련 사건에 대하여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 관할의 제한 없이 신청을 받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등기신청 편의 증진, 효율적인 등기사무 처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신청 방법 도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등기의 전자신청을 허용하면서 법 시행 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편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현행법상 전자신청 가능 등기유형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등기유형에 대하여 전자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나 전자신청은 본질상 전자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등기유형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원행정처 등과 협의하여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으로 등기 관할 특례가 도입되어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의신청 관할에 관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의신청 관할이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방법으로 전자 이의신청을 추가하여 국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신탁등기를 할 때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기록하도록 하고 그 내용 및 등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법 시행일 이전 신탁등기 중 시행일 이후 아직 말소되지 아니한 종전 신탁등기에도 등기관이 주의사항을 등기하도록 하여 신탁부동산의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미래등기시스템의 오픈일에 해당하는 2025년 1월 31일에 이 법을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신탁등기의 주의사항 등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법률안의 시행일도 모두 2025년 1월 31일입니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을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등기부를 일원화함으로써 국민의 등기신청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인등기법 개정안 제3조 2항은 해당 법령에서 등기의무를 부과한 경우 대리인등 선임등기를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조문만으로는 해당 법령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법인이 주사무소 또는 본점을 이전한 경우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분사무소 또는 지점을 이전한 경우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하도록 하여 사무소 이전 시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찬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7항 및 8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7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8항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점 등기부 폐지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상법과 상업등기법 관련 조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점 등기부를 폐지함으로써 본점 등기와 지점 등기가 별도로 존재함에 따른 본점과 지점 등기부의 불일치, 신청인의 부담 증가, 등기부 이중 관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로 적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적극 추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본점 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입니다.

개정안은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 종전 등기기록의 변경사항만을 등기하도록 함으로써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취지로 적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적극 추진 필요입니다.

다음 3번, 10페이지입니다.

외국회사 등기제도 정비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외국회사의 등기사항을 정하고 외국회사의 영업소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정안에서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있어 외국회사 영업소의 등기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회사 영업소의 등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기관은 모두 다 적극 추진 필요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등기소 관할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업소 이전으로 인한 등기,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경우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판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등기사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계기관도 적극 추진 필요입니다.

17쪽, 등기사무의 정지 요건 명시입니다.

개정안은 대법원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정전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등기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등기사무 정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등기사무에 필요한 처분명령권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관계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기관은 적극 추진 필요입니다.

19페이지,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신청 도입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전자신청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전자신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등기신청방법을 명확히 구분하고 전자신청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포함됨을 명시하며 전자신청의 등기유형을 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취지로 적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과 관련하여 일부 전자신청에서 제외되는 등기유형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법문에 명확히 위임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일부 등기유형에 관해서는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 줄 필요가 있다는 부동산등기법과 관련된 의견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적극 추진 필요이고 법원행정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이의신청 관할의 명확화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제도 도입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이의신청 관할 법원을 명확히 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관할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이의신청제도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계기관 의견도 적극 추진 필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정부가 제출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등기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상속사건 등에서 등기소 관할을 완화하며 신탁등기에 대한 신탁부동산 거래 시 신탁원부를 확인토록 주의사항을 기재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일부 사건의 관할 등이 완화되고 국민 편의를 증진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가 제출한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상법, 상업등기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민법 일부개정안은 회사 또는 법인의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유형을 확대하는 등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야 당연히 적극 찬성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차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21대 국회에서 다 합의가 된 안으로서 저희가 내년 1월 달에 추진할 미래등기시스템의 근거를 마련한 법안으로서 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차장님, 상업등기법 24조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24조 1항 2호와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전문위원, 이것 반영이 됐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전문위원 발표 시에 그 부분이 반영이 돼 있어서요. 정합성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법과 상업등기법이 동일하게 대법원규칙에 위임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유상범 위원** 나머지는 다른 의견 없이 각 기관에서 냈던 건의 의견들을 다 전문위원들이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더 토론할 위원이 계신가요?

○**박균택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앞서 심사한 민법 개정안의 내용을 포함하여 대안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 및 제6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동찬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입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참고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제21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동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2건의 법안을 여섯 차례 논의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으나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임기 만료 폐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신설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 입법례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은 법무부는 이견 없음, 법원행정처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장해·중상해 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입니다.

현행법상 구조금은 유족·장해·중상해 구조금으로 구분되는데 유족구조금은 유족에게, 장해·중상해 구조금은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장해·중상해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범죄피해와 인과관계 없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해당 장해·중상해 구조금을 지급하되 유족의 범위 및 순위는 현행 유족구조금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전문위원님, 혹시 이의가 있거나 혹은 논의할 부분이 있는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할 때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처 의견 없습니다.

3번,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구조금을 원칙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신청, 직권이 있는 경우 분할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이견 없으며 법원행정처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입니다.

11쪽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구조범위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 해당 외국인이 구조 대상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상 일정한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 등에도 이 법을 적용하여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호 보증이 없는 국가의 외국인이 결혼이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듦으로써 범죄피해 구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6쪽입니다.

가해자 재산정보 조회 근거 마련입니다.

현행법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련하여 가해자의 재산 등 사실조회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지구심의회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 등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재산정보, 금융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때 가해자의 재산 등을 조회함으로써 구상권 행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민사소송 제기 이전 단계에서 가해자의 재산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소송 수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24조와 관련하여 지구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는데 지구심의회의 설치 목적, 근거를 규정한 제24조 1항에도 해당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수정의견에 동의하였고 법원행정처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대체적으로 다 취지는 동의하고 가해자 금융정보 조회 요건 부분 관련해서 재판 절차에서 가해자가 범죄사실,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로만 한정되는데 금융정보의 경우에 소비, 처분이 용이해서 신속히 파악하고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이나 구상률 제고에 보다 효과적일 것을 고려할 때 수사 절차에서 자백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을 함께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법원행정처에서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법무부 의견 등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바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진우 위원** 수사 과정에서 자백한 경우 등등을 포함할 것이냐 하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서영교 위원** 넣어서 하시지요, 그러면.

○**소위원장 김승원** 서영교 위원님, 토론해 주시지요.

○**서영교 위원** 이게 지난번에 다 합의된 내용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다 합의돼서 본회의를 앞두고 통과되지 못한 거였거든요. 구하라법과 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고요.

범죄피해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범죄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이 못 받습니다. 그래서 황당한 일이기 때문에 빨리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런데 구조금을 주는데 나라가 계속 줄 수 없으니 가해자의 재산 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지금 법무부 말씀처럼 자백한 경우도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경우라서 그런 경우 넣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피해도 봤는데……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떠나면 유족이 받는데 유족 중에 청소년이 그것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이 그 위로금을 한꺼번에 받으면 그동안 너무 어려워서 조금이라도 지원금 받던 것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분할로 지급할 수 있게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우를 살려 주는 중요한 법안이라서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기본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내용은 아닌데 두 가지 중요한 쟁점이 있었고 그때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때 법률혼 관계에 있다가 해소된 사람에 대해서 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혼 관계보다 더 좋하게 보호받아야 될 법률혼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해소된 사람이 포함 안 돼서 그 부분 논의를 좀 해야 되는……

○서영교 위원 추가로 하기로……

○유상범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논의 중에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중의 일부는 수사 과정에서 자백했을 때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하는 것, 그러니까 받아 보는 것에 대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이론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한번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시간도 이렇게 됐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추가 논의를 해 가지고 이론의 여지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보기에는 법률혼 관계에서 해소된 경우는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때 이야기도 있고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어서, 법무부나 법원행정처도 다 동의한 내용이라고 판단하고요.

○유상범 위원 그래요. 지난번에도 논의가 많이 됐던 부분이 뭐냐하면 수사 과정에서 자백한 경우에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받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 사이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돼서 과연 그것이 타당하냐 하는 논의가 있었고.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만일 금융 제공 동의를 받아서 재산 보전이 되지 않으면, 상당 기간 재판 과정을 하다 보면 재산을 이미 다 은닉하거나 그런 경우에 사실은 피해 보상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계없이 수사 과정에서 명백한 경우에는 포함을 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또한 반대 측 주장은 수사 과정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 단계인데 그 과정에서 명백하다고 판단된다고 해서, 재판에서 뒤집힐 수도 있다. 그러니 과연 그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느냐라는 부분, 무죄추정 원칙에 근거한 반론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한번 재논의해야지 일단 제안됐다고 해서 여기서 갑자기 그냥 끝낼 부분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추가 논의를 한번 할 때 위원님들도 검토하시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도 한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더 의견

을 신중하게 가져가자는 거지요.

법안이 빨리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빨리 만들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예상치 않은 부작용을 항상 고민해서 그 부분까지 검토하고 나서 법안의 완결성을 높이는 노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하라법도 비슷하고,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사 중인 경우에 자백을 해서 재산 정보를 볼 수 있게 되는 경우가 그 재산을 다 뺏는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그렇습니다. 조회 범위가 예금 잔액 등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무죄추정의 원칙……

○**서영교 위원** 그런 제공을 받아서 혹시 나중에 보상해야 될 계기가 된다면 그것을 할 수 있게 미리 체크하는 경우이지 ‘유죄니까 지금부터 뺏겠어요’ 이런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데 뺏히 보이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백했고 이런 경우인데, 향후 피해자에게 기금을 줘야 되는데,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당연히 그런 경우에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저희는 위원님의 지금 말씀에 당연히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원래 합의했던 안은 수사 또는 재판 절차에서 자백한 경우도 포함시키자라고 했다가 지난번 1소위에서 ‘그래도 수사 절차에서 자백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너무 빠른 것 아니냐.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지게 돼서 저희는 다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을 논의해서 합의를 해주신다면 저희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라서 당연히……

○**서영교 위원** 유상범 위원님,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는…… 자꾸 가서 하시면 힘들어요, 아까도 그렇고. 그래서 얘기를 할 때 좀 들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좀 얘기를 들어 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돋고 이라는 과정에서, 말씀처럼 자백했는데 그때 돈을 뺏는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그렇습니다. 가해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거니까요.

○**서영교 위원** 정보를 조회해서 그런 예산을…… 나중에 이 사람이 빼돌리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정도를 사전에 체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상범 위원** 지난번에 소병철 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를 하셨거든요, 근거에 의해서. 그래도 어차피, 법안을 미루자는 게 아니라……

○**서영교 위원** 그래서 위원님은 그것을 반대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반대하시면 그 것을 빼고 가시고요.

넣겠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반대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유상범 위원** 아니, 그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전에도 그런 이론적 제안이

있었고 그 부분은 당연히 논의를 해 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지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갑시다. 넣읍시다. 뺏시다’ 이렇게 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서영교 위원 ‘그냥 갑시다. 넣읍시다’가 아니지요. 이것은 소위 위원이 충분히 논의하고…… 이 부분은 제가 아주 오랫동안 준비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여야가 다 합의해서 했던 내용이고……

○유상범 위원 그때도 제가 소위에 있었으니까 잘 압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요.

○유상범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안을 가는데……

○서영교 위원 그래서 위원님은 놓고 가자는 얘기시고, 그때 소병철 의원이 빼고 가자는 얘기셨고.

○유상범 위원 그렇습니다.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된 건데, 그래서 빠졌던 부분이거든요. 빠졌던 부분인데 우리가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넣는데 과거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으니 그러면 추가로 한 번 더 논의하고 이 부분에 대한 법원행정처나 법무부의 의견을 제대로 다시 한번 들어 보고, 다시 한번 의견을 정리해서 달라고 하고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고소·고발로 인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피해 본 재산적인 손해를 회복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난번 국감에서 제가 한동훈 장관께도 질의를 했지만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아마 수십조에 이르는데 그중에 피해자에게 환수되는 금액이 과연 몇 %일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두 자릿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인가 5%인가. 그래서 이 부분의 전담팀도 구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게 해 달라 또 그 부분과 관련된 조직이라든가 예산은 우리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드리고 싶다라고 나는 말씀했는데요.

오늘 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굉장히 정말 시급하고 필요한 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제를 받았더라도 일시불로 인해서 미성년자가 그것을 관리하지 못해서 또 사기를 당하거나 낭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수사 중에 할 수 있느냐 그것만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입장에서는 저는 수사 중도 포함시켜도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이고요.

수사 중에 확인 정도만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압류는 그다음 절차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물수보전 청구인가요? 그런데 그것은 지구심의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이 금융정보 조회가 지구심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지구심의회에서 하는 건데 지난번에도 행정처에서 지구심의회 판단만으로 제한 없이 하는 경우는 약간 객관성이 부족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 조회 요건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해 놨기 때문에……

실제 이것은 압류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면, 사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가해자는 자기가 구속도 되고 손해배상 올 거라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재산이 있는지를 조회하는 건데 약식명령이 확정되거나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이런 경우에 재산

을 조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재판 절차에 자백이 있는 경우는 조회할 수 있게 하자.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앞으로 당겨야 되는 것 아니냐 때문에 수사 절차의 자백까지 해서 그게 합의가 됐었는데요.

○**소위원장 김승원** 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선 피해 구제하고 나중에 구상 청구할 때 회수율이라 할까요? 그것은 몇 % 정도나 될까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10% 정도 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10%. 그러니까 그만큼.....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국가가 어렵게 또 더디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돼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 법안은 통과시키는 쪽으로 한번 논의를 모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영교 위원** 예.

○**박균택 위원** 적극적으로 틀린 것이 있거나 꼭 반영해야 할 것 있으면 지금 얘기를 해 주시고.

큰 이의가 없으면 이대로 통과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법무부의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박균택 위원** 위원장님, 법무부 입장에서도 큰 이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굳이 미룰 필요가 뭐가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우리 국회가 할 것은 빨리빨리 하고 신중할 것은 신중한 것이 낫지 그냥 한번 미뤄 보자, 한 번 더 토의해 보자 이런 식의..... 굳이 관련 부처가, 주무 부처가 반대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미룰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소위원장 김승원** 토론하시는 시간이라서 의견만 말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미뤄 보자, 토론하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 민주당의.....

○**박균택 위원** 아니, 그 당시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큰 이의가 없다는데, 지금까지 고민을 많이 하셨던 법안인 것 같고 토론도 많이 있었고 주무 부처가.....

○**유상범 위원** 그러면 행정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장이 어떠신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가 21대 때 합의안을 제출할 때는 일단은 수사가 포함이 됐었는데요, 소위 논의 과정에서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있고 수사 기간은 빠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종전 소위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처 결정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이성윤 위원** 법무부도 찬성하고 있고, 지난 21대 때 수사 기간의 자백을 포함시키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지금은 제가 보기에도 반대하는 의견도 없고 법원행정처나 법무부도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넣자고 하는 상황에서 미룰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리고 갑자기 나온 법안이 아니고 역사가 있는 법안인데 큰 반대 없으시다면 저는 통과가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수정 대안에 대해서 다 찬성하시는 건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신가요?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가십시오.

○소위원장 김승원 고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기관 공무원,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승원 박균택 서영교 유상범 이성윤 장동혁 전현희 주진우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찬

전문위원 이화실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변필건

법무실장 구상엽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